

수입금융 업무

금융거래가이드!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습니다.
수입과 수출에 따른 금융업무에서 외화송금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입신용장 개설

- ▶ 신용장 발행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능에 대한 걱정을 제거해 주고, 수입상은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 받으면서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상품 불인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은행이 매매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상호 다른 위험을 제거한다.
- ▶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기술(記述)에 불문하고, 최소불능이며 적격제시를 결제(Honour)하기로 하는 개설은행의 명확한 약속을 성립시키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 UCP600 제2조
- ▶ 신용장은 각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구분	신용장 종류	특징
거래목적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	■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발행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	■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발행
사용방법	매입신용장 (Negotiation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은행이나 매입 가능하고 어음 필요 ■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신용장으로 사용 ■ 어음신용장, 배서신용장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의 통지은행이 지급은행이 되며,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또는 해외지점일 경우 사용 ■ 무어음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비배서신용장
	인수신용장 (Acceptanc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이 인수은행으로부터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를 제공받을 때 즉, Banker's Usance의 경우에 사용 ■ 어음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비배서 신용장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의 통지은행이 연지급은행이 되며,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또는 해외지점일 때 사용 ■ 무어음신용장(본래 기한부 거래에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필요하였으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환어음 발행에 따른 인지세가 비싸므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UCP 상에 반영) ■ 기한부 신용장, 비배서 신용장
대금 지급 시기	일람출급신용장 (Sight Credit)	■ 수익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Draft)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일람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
	기한부신용장 (Usanc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 ■ 은행이 신용공여하는 "Banker's Usance"와 수출상 자신이 신용공여하는 "Shipper's Usance"로 구분
	선대신용장 (Advance Payment Credit 또는 Packing 또는 Red Claus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이 해당상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 ■ 선대 받은 대전이 수출상품의 포장(Packing)이나 집하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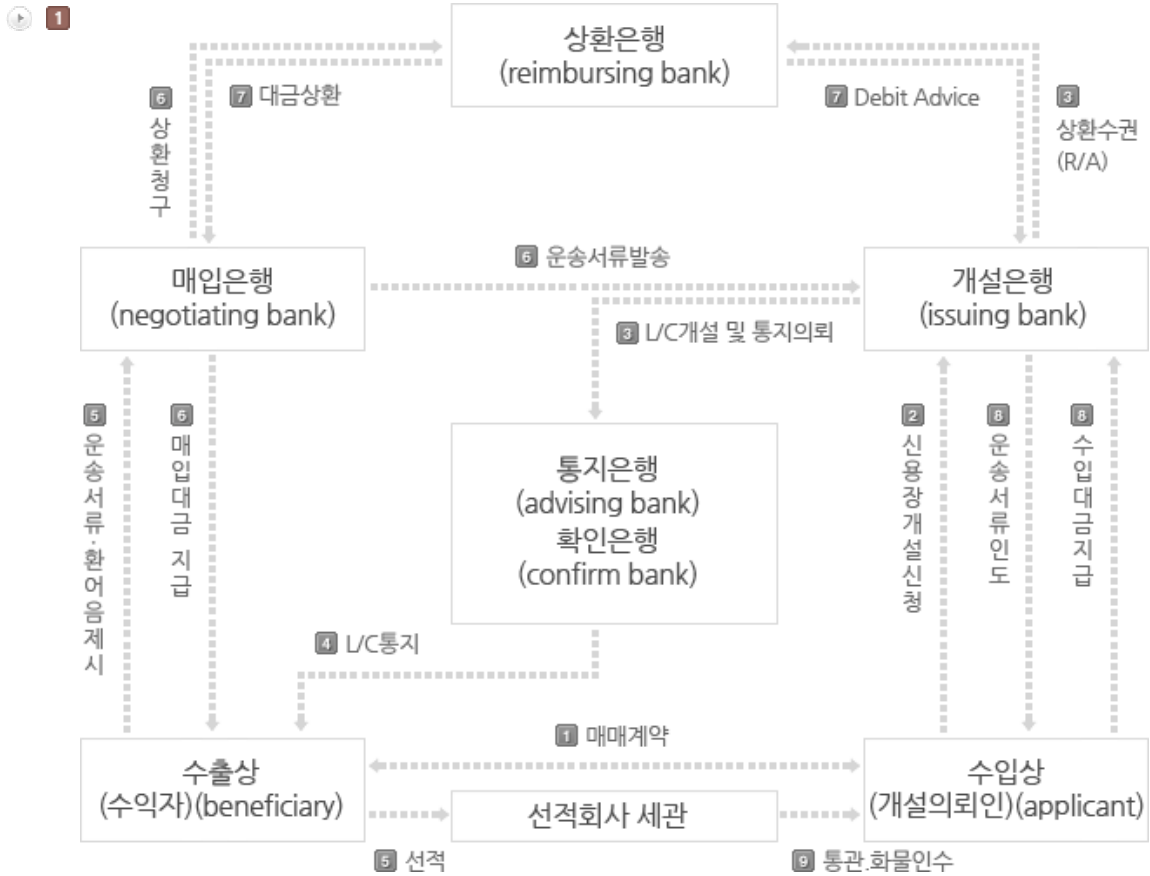
	할부지급신용장 (Installment Payment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부신용장의 일종으로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때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에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장이며 거치기간(Grace Period) 인정
양도 가능 여부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Non-transferabl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가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조건변경 할 수 없는 신용장 UCP600에서는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을 의미
매입은행 지정여부	자유매입신용장 (Freely Negotiabl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느 은행에서나 어음의 매입이 가능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 또는 개방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한다.
	지정신용장 (Straight Credit, Special Credit, Nominated Credit, Restricted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은행에서만 어음매입이 가능토록 발행한 신용장(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및 인수신용장) 신용장 원본에 매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과 상환문구를 통지은행용에만 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매입이 제한되는 상환제한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으로 구분
확인여부	확인신용장 (Confirmed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수익자가 제3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확약이 추가된 신용장(주로 통지은행을 확인은행으로 이용)
	미확인신용장 (Non-Confirmed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을 요하지 않는 신용장
통신수단	우편신용장 (Mail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장을 통지은행에 우편으로 전달
	전신신용장 (Cable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ex, SWIFT 등을 이용하여 전달 현재는 SWIFT방식에 의한 Message형태가 대부분

1 일람출급신용장 (Sight L/C)

일람출급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으로서 당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용장은 다음과 같다.



<일람출급신용장의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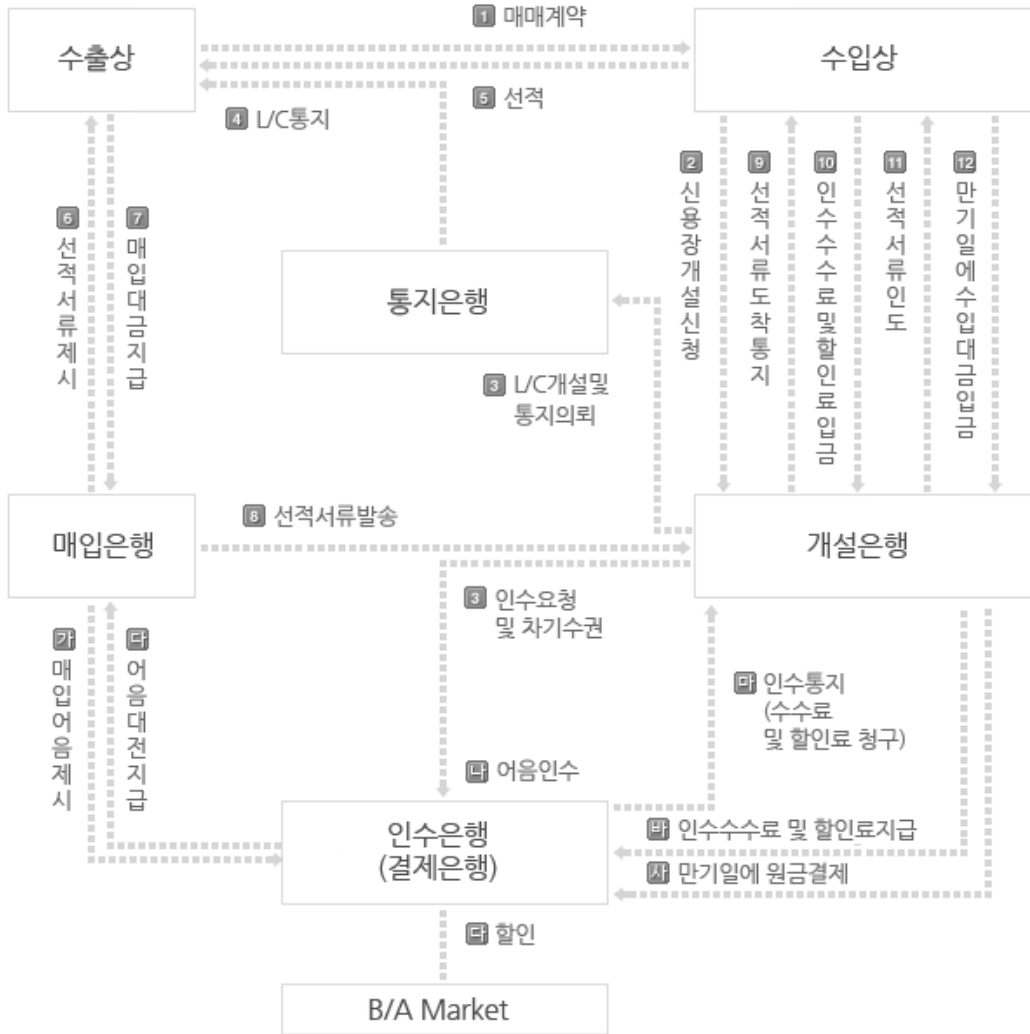


2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①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인도받은 후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자는 어음지급기간 내에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의 혜택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② 기한부신용장은 인수여부, 신용공여의 주체에 따라 Shipper's usance credit(무역인수신용장)와 Banker's usance credit(은행인수신용장)로 구분되며, Banker's Usance Credit는 다시 신용공여자에 따라 Overseas Banker's Usance Credit(해외은행인수)와 Domestic Banker's Usance Credit(내국수입유산스)로 구분한다.



〈해외은행 인수신용장의 업무흐름도〉



〈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의 업무흐름도 (상환방식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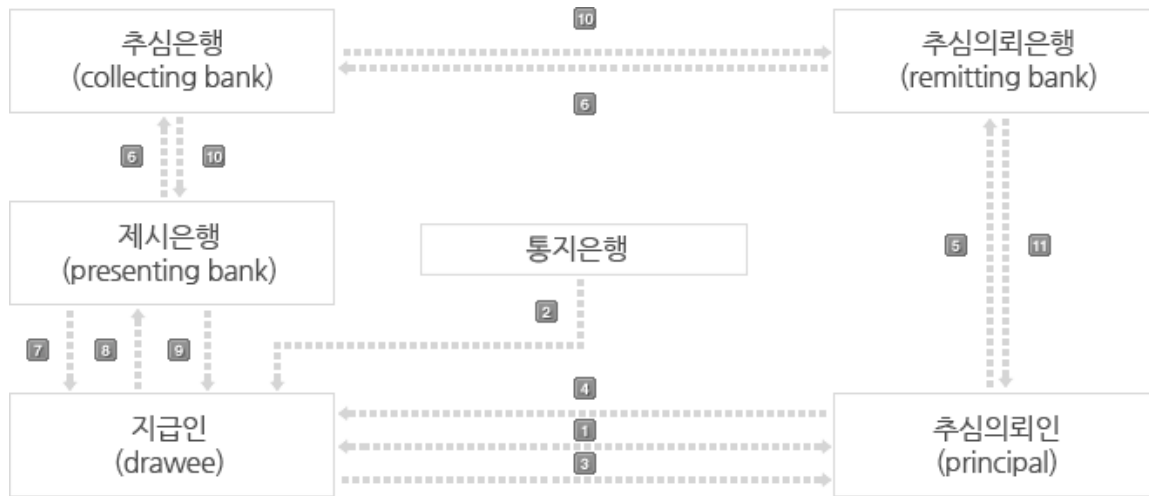


수입신용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 인감신고서(최초거래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 신청서 2부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 보험서류(무역가격조건이 수입상 부보인 경우)
-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 및 기타 서류

추심방식 수입거래

추심방식 수입거래는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무신용장방식 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간의 신용을 근거로 하여 거래를 한 후 은행을 통하여 서류제시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선적서류 도착통지후 수입업자가 선적서류의 인도를 요청하면 추심대금의 결제 및 관련수수료를 징수한 후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D/P와 수출상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한 후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며 수입자는 서류에 대해 인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추심서류를 수취하는 D/A로 구분된다.



수입국	1 매매계약 2 입허가(승인) 3 선적지시 4 선 적 5 추심서류의 제시 6 추심의뢰
수출국	7 추심서류 도착통지 8 추심서류의 결제 또는 인수 9 추심서류의 인도 10 송 금 11 수출대금 회수